##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05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 박해철 • 박지원 • 김 윤

한준호 · 송옥주 · 임미애

박용갑・양부남・장종태

문금주 · 오세희 · 이병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농어촌지역의 학령아동수는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당 국의 재정효율화 명목의 학교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은 매우 악화되고 있음.

농어촌지역 학교 접근성 악화는 학생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학습 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으로 이어지고, 도농간 교육격차 확대 및 농어촌 학생 유출로 이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통학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통학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법제정 이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통폐합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법률 제 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 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①
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	
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	
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	
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다만,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하
	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 부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
	생에 대해서는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
	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